

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11. 10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12월 5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1998년 12월 10일
(제155회정기회 제5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복지환경국장 박환규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건립중인 충청북도장애인체육관이 98.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
- 장애인체육관 (장애인이용시설)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, 기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키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변경
-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→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 운영조례

○ 시설명칭 변경

-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→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

○ 위치를 복지시설별로 지정 (제2조)

-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55-24번지에, 체육관은 충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둔다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문기)

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

○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건립중인 충청북도 장애인체육관이 98.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

○ 장애인체육관 (장애인이용시설)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,

기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키 위한 것으로

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대비표